

종란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

개정 2017.4.6.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-31호

신구문 대조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5. (생 략)</p> <p>6. “뉴캣슬병”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정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.</p> <p>7.〈신 설〉</p>	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~5. [현행과 같음]</p> <p>6. “IE 지정 뉴캣슬병”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와 일치하는 -----.</p> <p>7. “기타 뉴캣슬병”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6호에 따른 IE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.</p>
<p>제3조(생산조건)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종란은 수출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.</p>	<p>제3조(생산조건) -----</p> <p>----- 종란(이하 “수출종란”이라 한다)은 -----.</p>
<p>제4조(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)</p> <p>①(생 략)</p> <p>②수출종란 생산 종계장(종란 보관장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수출종란의 수출 전 1년간 반경 10km이내에서 뉴캣슬병(VND)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.</p>	<p>제4조(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)</p> <p>①[현행과 같음]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IE 지정 뉴캣슬병의 -----.</p>

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수출종계장 등의 조건) ①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은 수출 전 1년간 뉴캣슬병(lentogenic ND), 가금콜레라, 추백리, 닭전염성후두기관염, 닭마이코플라즈마병, 오리바이러스성 장염(오리 및 거위 종란에 한함), 오리바이러스성 간염(오리 종란에 한함), 가금티푸스, 마렉병, <i>Salmonella enteritidis</i>, <i>Salmonella typhimurium</i>, 닭뇌 척수염, 앵무병, 가금백혈병, 세망내피증, 닭전염성 F낭병, 닭전염성 빈혈(CAA), 닭전염성기관지염, 계두, 가금결핵, 산란저하증후군(EDS '76) 및 저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, 병리학적 또는 혈 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.</p>	<p>제5조(수출종계장 등의 조건) ① 수출종란의 생산 종계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, 가금콜레라, 추백리, 닭전염성후두기관염(오리 제외), 닭마이코플라즈마병(오리 제외), 오리바이러스성 장염(오리 및 거위에 한함), 오리바이러스성 간염(오리에 한함), 가금티푸스, 마렉병(오리 제외), <i>Salmonella enteritidis</i>, <i>Salmonella typhimurium</i>, 닭뇌척수염(오리 제외), 닭전염성기관지염(오리 제외)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,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.</p>
<p>제6조(수출종란의 조건)</p> <p>①·②(생 락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 1.·2. (생 락) 3. 닭마이코플라즈마병, 추백리, 가금티푸스에 대하여는 수출국 정부가 시육농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</p>	<p>제6조(수출종란의 조건)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 3.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종란 생산 종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</p>